

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(채용, 승진) 마련

■ 규정명 : 「인사규정」 및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

■ 평가대상 조문 1 ■

(1) 승진

【인사규정】 제31조(특별승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(승진의 원칙) 및 제29조(승진자격)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.

(2) 채용

【인사규정 시행세칙】 제2절 채용심사위원회 제11조(구성) ①위원회는 부서장, 인사담당임원,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또는 부서장, 인재경영부장,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
□ 평가항목

- 제재규정의 적정성, 특혜발생 가능성, 재량 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임직원의 부정부패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,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신고사례 미미
- 채용 시 부정응시자에 대한 합격취소, 응시제한 등 명확한 징벌규정 부재
- 감독당국의 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관련 비위 조사 결과, 청탁·외압에 따른 불합리한 채용, 채용방법의 객관성·투명성 확보 미흡 등 지적 사례 다수 발생

□ 검토결과 : 개선권고

-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문화 확산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
-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제한 실시
- 청탁·외압에 따른 채용 방지를 위해 시험위원의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, 채용심사위원회를 과반수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

| (제)개정안 | 개선권고안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특별승진 사유 <신설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승진 사유 - 내부고발자를 추가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부정응시자 <신설> ■시험위원 회피 사유 <신설> ■채용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- 1명이상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합격 취소 후 일정기간(5년) 응시 불가 ■ 시험위원 회피 사유 추가 - 4촌이내 친족, 금전적 이해관계자 등 ■채용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-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|

□ 제·개정 완료 여부

| 제·개정 완료 여부 | 시행일 | 최종 반영 조문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○ | '13.6.20 | <p>【인사규정】 제31조(특별승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(생략)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임직원의 부정부패 사실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</p> |
| ○ | '13.10.25 | <p>【인사규정시행세칙】 제6조의 2 (합격의 취소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.</p> <p>1.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자</p> <p>2.허위서류를 제출한 자</p> <p>3.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8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</p> <p>② 합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.</p> <p>【인사규정시행세칙】 제7조(출제위원 위촉 등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출제위원 또는 면접위원(외부전문가포함)으로 위촉된 자가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제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재경영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평가직무를 회피해야 한다.</p> <p>【인사규정시행세칙】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사장, 인사담당임원,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또는 부서장, 인재경영부장,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,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|